

# 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 발간 규정

제 정	1985. 3. 1	규칙 제1010호
1차 개정	2005. 5. 12	규칙 제1125호
2차 개정	2006. 8. 31	규칙 제1162호
3차 개정	2012. 7. 16	규칙 제1298호
4차 개정	2020. 5. 11	규칙 제151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의 발간에 있어서 논문의 투고, 심사, 기타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 대상 논문 심사
2. 논문집 편집에 관한 사항
3.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발간방법) 본 논문집은 연 1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고 번호로 표기한다.

제8조(투고자격) 원고의 투고자격은 본 대학의 조교 및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또는 공저자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게재대상 논문) 본 논문집에는 다음 각 호의 논문 중에서 1인 1편의 미발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다만, 집필자가 2편 이상 또는 기발표 논문의 게재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1. 연구보조비에 의한 연구논문
2.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논문(과학교육연구소 지원 연구논문 제외)
3. 기타 위원회에서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논문

제10조(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및 조교 순으로 한다.

제11조(투고요령) 본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본 대학 논문투고요강의 정한 바에 따라 기한 내에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 투고시 저자는 논문이 논문투고요강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별지 <서식 1>의 저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원고의 침삭) 투고된 논문은 위원회에서 그 체재와 내용에 대하여 집필자와 합의하여 침삭할 수 있다.

제14조(교정) 집필자는 해당 논문의 초교에서 최종 교정까지를 책임져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본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은 인문·사회계는 200자 150매, 자연과학계 및 예·체능계는 200자 원고지 100매를 초과할 경우와 도표, 사진 등으로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초과분 및 소요되는 특별한 비용을 집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별책)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별책 20부를 필자에 증정하나, 그 이상 부수는 필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5.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31. 규칙 제1162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6. 규칙 제1298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11. 규칙 제1518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논문투고요강

1. 연구논문의 원고는 연구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미발표 논문에 한한다. 다만,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 발표 논문은 게재할 수 있으며, 기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내용 또는 결론을 포함하는 논문의 경우 반드시 논문의 첫 페이지 하단에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원고는 연중 교육지원과에서 접수하며, 마감일은 익년 1월 10일(2월말)로 한다.
3. 원고에는 표제, 필자의 소속 학과, 직명, 성명 등을 명기한다.
4. 원고는 원칙적으로 인문·사회계는 200자 원고지 150매, 자연과학계·체능계는 200자 원고지 100매이내로 한다.
5. 논문 제출 시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 600 단어이내의 외국어 초록, 외국어일 경우에는 200자원고지 5매이내의 국문초록을 첨부할 수 있다.
6. 논문의 기술순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제목(국문과 영문)
  - 나. 필자명(국문과 영문)
  - 다. 초록, 개요(Summary) 및 요약(abstract)은 본문의 뒤에 오도록 한다.
7. 원고는 한글을 주로 하되 내용의 핵심 부분이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와 외국어를 쓸 수 있다.
8. 도표 및 사진 등이 삽입된 원고는 명료하게 작성하고 인쇄될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9. 그림, 사진, 도표 등의 제목과 설명의 표기 위치는 그림의 경우 하단에 도표의 경우는 도표의 상단에 표1(또는 Tabel) 및 그림(Fig)1 등으로 표시한다.
10. 외국어로 원고를 작성할 때는 타자용지 double space로 작성하되 1면 22행으로 한다.
11. 고딕체 표기를 요하는 부분은 로, 이태릭체는 ^로 표시한다.
12. 논문의 장절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章 : I, II, III
  - 節 : 1, 2, 3, 또는 A, B, C
  - 項 : 가, 나, 다 또는 1, 2, 3
  - 目 : (1), (2), (3) 또는 a, b, c
13. 각주(脚註)는 직접 인용이나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설명을 필요로 할 때 한하며, 각주 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각장을 무시하고 일련번호를 붙인다.
14. 제12항 및 제13항의 장절 표시와 각주 표기방법은 각 학문분야별 전문 학회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